

2024. 8. 23.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제 목 : 8월 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8. 27.(화) 14: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이해관계인 (대리인)	비고
2024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 유상범 외 6 (법무법인 도우화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붙임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과 국회 법사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4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7일(화) 14:00 대심판정에서, 2024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관한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 사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4. 7. 9.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종결한 행위, 위 청원 안건과 관련하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등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에 관한 것이다.



2024. 8. 23.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1대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위원들이고, 피청구인은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다.
- 법사위는 2024. 6. 12.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로 김승원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국민의힘 소속 간사는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 이후 법사위는 2024. 6. 14.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였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 2024. 6. 25. 개최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하여 청구인 유상범이 국민의힘 소속 간사를 선임하는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정된 의사일정만을 진행하였다.
-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024. 6. 20. 공개된 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4. 6. 23. 국회법 제123조에 따른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었고, 2024. 6. 24. 법사위에 회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청원 안건’이라 한다).
- 피청구인은 2024. 7. 9. 개최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사위 전체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이 사건 청원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였다.
-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간사 선임의 건’을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의사일정 다음 일정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는 변경동의 건을 각각 표결에 부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 이어 이 사건 청원 안건에 대하여 전현희, 이근태, 박은정, 서영교 위원을 비롯하여 청구인 곽규택, 주진우 등이 대체토론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대체토론 도중 청구인 송석준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토론을 중단시켰고, 그 후 청구인 주진우, 유상범, 송석준, 장동혁이 대체토론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원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서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중략)…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이

에 청구인 장동혁이 대체토론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전현희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종결 동의를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중략)…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면서 항의하다가 퇴장하였고, 그 후 표결이 이루어져 위 토론종결 동의는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원 안전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로 회부할 순서이나, 해당 청원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회부하겠다고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제3항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제4항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하 위 안전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청문회 안전’이라 하고, 이 사건 청원 안전과 이 사건 청문회 안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안전들’이라 한다)을 각각 상정한 후 가결을 선포하였다. 위 청문회는 2024. 7. 19. 및 26.에 2차에 걸쳐 실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 청구인들은 2024. 7. 12.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① 이 사건 청원 안전을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② 이 사건 청원 안전과 관련하여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③ 이 사건 청문회 안전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④ 이 사건 청원 안전과 관련하여 청원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청원안·청문회 실시관련 안전 심의·표결권,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라3).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4. 7. 9.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청원 안전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종결한 행위, 피청구인이 같은 회의에서 이 사건 청문회 안전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행위, 이 사건 청원 안전과 관련하여 청원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위원회 구성 참여권, 청원안 심의·표결권,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 또는 청구인 유상범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이다.

□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① 이 사건 회의 당시 국민의힘 소속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안건들을 처리한 행위, ② 이 사건 안건들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선포하는 등 처리한 행위, ③ 이 사건 청원 안건이 국회법 제123조 제4항¹⁾에 규정된 접수대상이 되지 않는 청원임에도 이를 법사위에서 심사하도록 한 행위, ④ 이 사건 청원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 도중 청구인들의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발언기회를 제한한 행위, ⑤ 국회 본회의의 결정이 아닌 법사위의 의결로 이 사건 청문회 안건들을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등이 청구인들의 법사위 구성 참여권 내지 의사일정 협의권, 청원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등에 대한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1)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④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